

「2023년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모집 공고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인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1월 2일

용인시장

1. 모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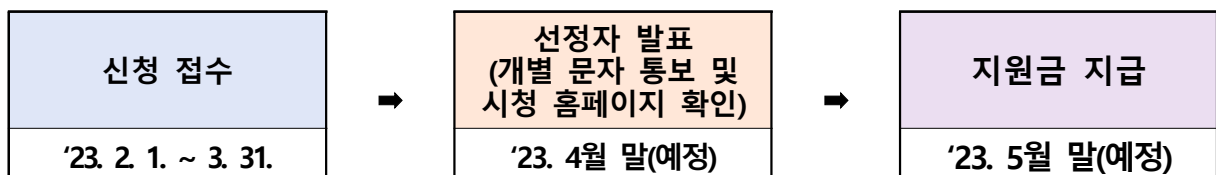
- 신청기간 : 2023. 2. 1. (수) ~ 3. 31. (금)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실제 보증료 납부액 지원
- 신청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사업
페이지 바로가기



※ 용인시청 홈페이지 경로 :
분야별 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하기

○ 지급시기



- 지원규모 : 500명 내외 ※예산 초과 시, ①~③의 순서로 선정자 발표
① 중위소득 낮은 가구 순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순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은 순

2. 지원 대상

○ ①~④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1983년생 ~ 2005년생 무주택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청년)

② 용인시 소재 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 신청일 기준, 보증서상 전세목적물 주소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가입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아직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 후,
신청일 기준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완료가 이루어지면 지원 가능.

④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으로 판정, 기혼자는 부부합산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지원 제외대상

- 청년 본인 명의의 건물(주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2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토지분) 과세여부로 확인 예정)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3. 2. 1. (수) ~ 3. 31. (금)

○ 신청방법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온라인 신청

· 용인시청 홈페이지 경로 : 분야별정보 > 복지 > 청년 > 청년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하기 (신청하기 화면에서 제출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홈페이지 본 사업 안내 페이지 내, 다운가능)
작성 후 제출 시, ①~③ 서류만 제출, ④,⑤,⑥,⑦ 서류 제출 제외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행정기관에서 ④,⑤,⑥,⑦ 직접 조회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스캔하여 업로드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

※ ① 가입 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제외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또는 보증공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③ 청년 명의 통장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2년 1~12월(1년)고지금액 표시,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22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과 ‘22년 1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으로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부부합산 산정), 신청인 및 배우자 외 건강보험료 별도 합산하지 않음

※ 피부양자는 부양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으로 판정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④,⑤,⑥ 관련 대상자별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혼	가입자		○	○	×
	피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
기혼	외별이	가입자	○	○	×
		피부양자	×	×	○
	맞별이	가입자	○	○	×
		가입자	○	○	×

· 소득판정 기준표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01,000	123,332	120,104	-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 가구원 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건강보험 가구원 수 기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아래 별도 소득증빙 서류 (①~⑤ 중 택일하여 제출)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보수지급명세서

③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④ 국민연금 지급내역 확인서

⑤ 소득금액증명서

※ '22년 1~12월까지 1년간 소득 평균액

※ 소득액 및 가구원 수는 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합산(태아 미포함)

· 온라인 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청 방문 접수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 상담창구 내방 후,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문 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031-324-2761

※ 온라인 제출서류에 서류2종(홈페이지 본 사업 안내 페이지 내, 다운가능)추가제출

① 용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선정 및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 ①~③의 순서로 우선순위 결정 후, 최종 대상자 선정

- | |
|--|
| ① 중위소득 낮은 가구 순 (100%이내 > 120%이내 > 150%이내 > 180%이내)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순 (소득 구간이 동일한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선정)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
(가구원 수가 동일한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 |
|--|

○ 선정자 발표 : '23년 4월 말 (예정)

※ 개별 문자 통보 및 시청 홈페이지 확인

○ 지원금 지급 : '23년 5월 말 (예정)

○ 입금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 입금

5.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환수조치 합니다.

○ 보증료 지원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세액을 중복하여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공제 시 소득세법에 의거 국세청에서 공제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1688-8114,
SGI서울보증 ☎1670-7000

·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031-324-2761